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2. 16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경제지원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2. 16.)

## 2. 개정이유

- 도시농업 분야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도시농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스마트 농장 조성 후 전문적인 운영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 - (현 행)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
  - (개정안)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도시농업 정의를 조례 내용 전반에 반영하여 용어 변경(안 전반)
  - (현행) 도시텃밭 → (개정안) 도시농업
- 도시농업, 도시농업인 및 스마트 농장 정의 신설(안 제2조 1, 2, 5호)
- 스마트 농장 운영 및 관련 교육·체험활동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조5호, 제5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: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
- 비용추계서: 붙임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3. 12. 1.~12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‘도시농업’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,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으로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23. 7. 25. 제정, 2024. 7. 26. 시행예정)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
- 조례 제명 및 내용 전반에 ‘도시텃밭’을 ‘도시농업’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, ‘스마트농장’의 정의·구성·운영·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
-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문제 극복과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